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66
------	------

제출일자 : 2023. 9. 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2023. 7. 27. ~ 2023. 8. 16.)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다. 동 위임 제외사무가 아닌 내용 삭제(현행 제2조제4호 삭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주민등록법」 제2조, 제24조, 제30조, 제37조
-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협의기관: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8조의 2”를 “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한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다만, 주민등록증 신청 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u>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u>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u>구청장이</u>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u>각호의</u>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u>구청장이</u>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u>각호의</u>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u>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u>
	2. <u>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u>
	3. <u>삭 제</u>
	4. <u>법 제21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u>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 및 삭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김사라
연 락 처	2627 - 1044

## 현행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시행 2022. 12. 3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8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07.24>

1.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4.09.13>
2.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5.07.31>
4. 법 제21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5. 삭제 <2004.09.13>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37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호, 199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 1996.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 2004.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5호, 2022.12.3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22. 1. 11.>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20. 6. 9.>

②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개정 2021. 7. 20.>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④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6. 12. 2.>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2016. 12. 2.>

⑥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1. 19., 2017. 7. 26.>

⑦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⑧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金)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1.>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증으로 신고한 사람
  -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 11.>

##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43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13. 12. 17.,

2014. 12. 31.>

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40조제3항제7호의 사유로 재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미 재발급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습득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3의2. 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은 사람의 종전 주민등록증임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4.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자의 출국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이주자 또는 현지이주자에게 발급된 거주자용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불능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23. 1. 10.>
- [제목개정 2014. 12. 31.]